

報 道 資 料

題 目 : 「**투명한 企業經營을 위한 企業支配構造改善案**」
- **證券去來法 改正事項**

主要內容

□ 정부는 2000.10.27(금) 당정협의를와 財정부·산자부·공정위·금감위 및 법무부등 관계장관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지배구조 추가개선방안(증권거래법 개정사항)에 대하여 논의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였음

□ 금번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IBRD용역보고서의 권고내용을 토대로 검토된 투명한 기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사외이사등 현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증권거래법과 관련된 사항임

* IBRD용역보고서의 권고내용중 상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에서 추후 결정할 것임

□ 금번 개선방안은 증권거래법에 반영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, 국회에서 심의·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됨

※ 별첨 : 「**투명한 企業經營을 위한 支配構造改善案**」

報道資料生産課 : 財政經濟部 證券制度課(TEL: 500-5363~5)

財 政 經 濟 部 公 報 官 室

투명한 企業經營을 위한 支配構造改善(案)

- 증권거래법 개정사항 -

2000.10.27

財 政 經 濟 部

1. 추진방향

- 그 동안 기업구조개혁의 핵심과제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제도 도입등 기업지배구조(corporate governance) 개선을 중점 추진
-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기본틀은 마련되었으나
 - 일선경영 관행이나 인식의 변화는 아직 미흡하므로
 -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노력이 지속되어야 함

- ◇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는 주주·이사회·경영진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는 것임
 - 주주중심의 경영문화가 확립되고 소수주주가 지배주주·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
 -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기관으로서, 주주총회는 기업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중심적 역할 부여
 - 사외이사는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기업경영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보완
 - 대주주·계열회사등 이해관계인과의 내부거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감시되는 시스템 구축

2. 기업지배구조 개선(안)

주주의 권리 강화

가. 집중투표제 관련제도의 개선

-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시 찬반투표를 하는 현행 제도와는 달리, 선임하는 이사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하여 선호하는 후보에게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득표순으로 선임하는 방식임
- 집중투표제 의무화시 장·단점
 - 소수주주를 직접 대표할 수 있는 이사선임이 가능하여 이사회에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으나
 - 이사회에서 지배주주파와 소수주주파의 이해상충으로 기업경영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

※ 우리나라의 집중투표제 도입현황

- 2000년 5월말 기준 집중투표제를 정관에 도입하고 있는 상장회사는 전체상장법인의 22%(707개사중 155개사)수준
- * 외국의 사례 : 칠레·멕시코·러시아가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1945년 37개주가 의무화하였으나 현재 6개주로 축소

□ 개선방안 : 집중투표제 시행요건 및 사외이사선임절차 개선

① 소액주주의 집중투표제 실시요구자격 완화

- 현재 주총에서 실제집중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3%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(1인 또는 다수)가 사전에 요청해야 가능

- 개선방안 : 3%이상 → 1%이상*

* 현행 상장법인 주주제안권 행사요건(1%이상 지분보유)과 동일

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“소액주주(1인 또는 다수)가 일정지분(1%이상)을 확보하여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당해 후보를 주총에 반드시 추천”토록 함

- 소액주주 추천인사가 주총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

③ 집중투표제를 시행하기 위한 정관변경 결의(현행 주총특별 결의 필요 : 출석% 전체½)시 대주주의 영향력을 최소화

- 보유지분 3%이상의 모든 주주는 3%까지만 의결권 행사

◆ 대형 상장·코스닥법인(총 자산 2조원이상)에 우선 적용

나. 소수주주의 견제기능수행에 유용한 권리로서 외국에 비해 행사요건이 높은 일부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

□ 會計帳簿閱覽權 : 1%(자본금 1000억원이상기업 0.5%) → 0.1%(0.05%)

□ 理事의 違法行爲留止請求權 : 0.5%(자본금 1000억원이상기업 0.25%)
→ 0.05%(0.025%)

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내부거래감시 강화

가. 사외이사의 자격 및 선임절차의 개선

□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“주식보유”나 “금전적인 거래 관계”가 있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선임을 제한

- 주식보유의 경우는 1%이내에서 허용(홍콩증권거래소의 예)
- 금전대차등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선임을 제한

□ 사외이사등 이사선임절차 개선

- 이사후보의 성명·약력등 후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주총목적사항에 구체적으로 기재(주총전 확정)하여 주주에게 통지(주총 2주전)하고 공시토록 함
- 사외이사후보가 결정된 경우 후보에 관한 사항(후보자 성명, 후보추천인, 추천사유 등)을 공시하여 투명성 제고

나.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

□ 사외이사의 보수나 활동내역을 주주가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주총참고자료로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시

- * 예시 : 사외이사의 정규보수 및 정규보수이외 회사로부터의 수혜 내역, 참석율, 의안찬반여부 등

다. 사외이사의 권한 확대

- 사외이사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회사의 부담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는 권한부여(이사회 결의필요)
-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반드시 사외이사가 되도록 함
 - * 현재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위원의 2/3이상으로만 구성하면 됨
 - ◆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관련사항은 대형 상장·코스닥법인(총 자산 2조원이상)에 우선 적용

라.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강화

- 이해관계자(대주주 및 계열회사등 특수관계인)와의 일정규모 이상(예: 단일거래규모가 자산 또는 매출액의 1%이상등)의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사후에 주주총회에 보고
 - ◆ 대형 상장·코스닥법인(총 자산 2조원이상)에 우선 적용

기타 법령개정사항이외에 추진할 사항

- 사외이사 직무수행지침(code of conduct)을 마련
 - 사외이사가 “해야할 일”과 “해서는 안되는 일”을 분명히 하여 바람직한 사외이사의 활동방향과 윤리기준을 제시
 - * 상장회사협의회가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중(11월초 확정)

□ 사외이사 인력pool 제도 개선

- 기업이 전문성과 신망있는 사외이사 후보정보를 용이하게 파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인력 pool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제공
- 상장협이 사외이사 인력풀을 운용하는 각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문분야별로 database화하고 인터넷등을 통하여 공개
- * 현재 사외이사 인력 pool은 상장협(617명), 경영자총연합회(회사간부 중심 약 2000명) 등이 있음

□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정착 유도

- 상장회사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공시
- * 판단기준은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(증권거래소에 설치 : 10.17 구성)에서 제시(11월 예정)
- 매년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을 선정·발표
- *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선정하여 증권거래소가 공표하고 동 기업(최고경영자, 사외이사 포함)에 대해서는 포상, 수수료면제 등 혜택부여

3. 기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검토사항

가. 집단소송제 도입문제

집단소송제를 도입하되, 단계적으로 도입함

- 법무부가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협의를 거친후 최종방안을 확정

나. 상법개정이 필요한 IBRD권고내용 추진방향

IBRD 권고안 중 상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가 상법개정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예정

※ IBRD권고안중 상법관련 주요내용

- 주총결의사항을 확대하고, 이사회에 승인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경영진에 위임을 금지
- 이사, 감사등에 대하여 회사비밀유지의무 명시하고,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 등

<참고 1>

그동안의 지배구조개선 추진현황

1. 1998년 주요추진내용

- 사실상의 이사제도 및 집중투표제 도입
- 상장법인에 대하여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(거래소상장규정)
 - 98년중 1인이상, 99년이후 이사총수의 1/4이상

2. 1999년 주요추진내용

-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 및 권고
 -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에서 마련하여 권고
- 서면투표제 도입
- 이사회회의록에 의안에 대하여 반대한 이사 및 반대의견을 기재토록 함
- 이사회내 위원회제도 및 감사위원회제도 도입

* 감사위원회는 현행 감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총위원의 2/3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

□ 사외이사 제도 법정(증권거래법)

- 상장법인은 이사총수의 1/4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함
-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규정

□ 대형 상장법인(총 자산 2조원이상)에 대하여 사외이사 선임비율 확대

- 2000사업연도(최소 3인이상)
- 20001사업연도(최소 3인이상, 이사총수의 1/2이상)

□ 대형 상장법인(총 자산 2조원이상)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의무화

□ 금융기관 지배구조 강화

- 은행·증권, 대형 증권·보험사(총자산 2조원이상), 투신사(수탁고 6조원이상)에 대한 지배구조 강화
- 감사위원회 설치의무화, 사외이사 선임강화(이사 총수의 1/2이상) 및 소수주주권 강화(상장법인의 1/2수준)

<참고 2>

현행 소수주주권 행사요건

종 류	상법	증권거래법
- 대표소송제기권	1%	0.01%, 6월이상보유
- 이사위법행위 유지 청구권	1%	0.5%(0.25%), 6월이상보유
- 이사·감사·청산인 해임청구권	3%	0.5%(0.25%), 6월이상보유
- 회계장부열람청구권	3%	1%(0.5%), 6월이상보유
- 주주제안권	3%	1%(0.5%), 6월이상보유
- 임시주총소집청구권	3%	3%(1.5%), 6월이상보유
- 업무·재산상태 검 사인 선임청구권	3%	3%(1.5%), 6월이상보유

1) ()는 자본금 1,000억원이상인 상장·코스닥법인에 대하여 적용